

제품리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용 리콜매뉴얼 제작·배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제품 사고가 추가적인 사고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용 리콜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금년 2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과 기술표준원의 권고에 따른 리콜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법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중소 제조업자나 영세한 수입업자의 경우 아직까지 동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사업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사항과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쓴 매뉴얼을 통해 새로운 제품리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동 매뉴얼은 국내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어린이용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리콜대상이 되는 제품결함이란 무엇인지, 사고발생시 누가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설과 보고양식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제품리콜 사용자용 매뉴얼은 소비자를 위해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여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매뉴얼은 책자로 전국 사업자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도 있다.

* 문의 : 지식경제부 안전품질정책과(02-509-7238)